

## 2025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농공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「2025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5년 월 일  
무 주 군 수

### 1.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 :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와 폐수배출위탁처리비를 지원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도모
- 사업기간 : 2025.1. ~ 2025. 12.
- 사 업 명 :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
- 사업내용 : 2024년도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
- 사업근거 :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(입주기업체 지원)
- 신청대상
  - 무주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기업
  - ※ 아래 지원대상 상세내역 참조

□ 신청기간 : 2025년 7월 9일(수) ~ 7월 23일(수)/15일간

- (접수마감)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,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

## □ 신청서 제출

- 접수처 :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(063-320-2353)
- 제출서 서류
  -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신청서,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,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, 계정별 원장
- ※ 국세, 지방세 납부증명서 및 표준재무제표 등은 신청서 제출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동의 후 군담당자 확인 / 미 동의시 신청업체 제출
- ※ 제출서류 외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

## 2. 지원체계

### □ 지원대상

-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,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 - (물류비) 무주군 농공단지내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
  - (폐수처리) 무주군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어 위탁처리하는 업체(단, 자체처리시설이 있지만 위탁처리하는 업체 포함)

#### 신청 제외 기업

- ◆ 공통 : 세금 미납 기업(지방세, 세외수입 체납업체 등)
- ◆ 물류비 : 비제조업(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/아스콘/골재 등),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
- ◆ 폐수처리 : 유해업종(시멘트, 폐기물 등) 업체

###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

- 1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기준 적용 ※ 별첨 참조
- 2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[별표3]

□ 지원기준 :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

\* 지원 기준은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이나,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에 따라  
신청기업 지원

\* 부담비율 : 도 15%, 무주군 35%, 자부담 50%

- (물 류 비)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% 지원  
최종 생산품의 ' 24년도(1년간) 물류비 지원 \*원자재 구입비, 택배비 포함
- (폐수처리)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토대로 지원금 지급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에 문의, 제출  
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

- 붙임 1.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.  
2. 관련법 1부.  
3.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시행령 [별표3] 1부. 끝.







## 【붙임 2】 관련법

### 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####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

-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(이하 “회계관행”이라 한다)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. 다만,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.
-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
  1.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: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

#### 제8조(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)

- ①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.
- ②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(中企業)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.

### □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

#### 제6조(입주기업체 지원)

-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1. 폐수매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
  2. 물류보조금 지원사업
  3.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,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【붙임 3】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)	E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비고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